
우리나라 年金制度의 問題點과 各國 年金制度의 動向分析

閱 載 成

.....▷ 目 次 ◁.....

- I. 序 論
- II. 運營形態와 適用對象
- III. 給與種類와 資格要件
- IV. 給與水準
- V. 年金財政
- VI. 結 論

I. 序 論

經濟成長은 國民의 福祉를 隨伴할 것이라는 開發戰略下에 60年代 이후 우리나라는 經濟開發計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적인 高度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國民들은 經濟成長으로 이룩된 國民所得의 증가와 產業構造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成長의 果實이 公平分配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成長과 福祉의 乖離感과 國民生活과 직결된 就業 및 失業, 保健,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教育, 住宅 그리고 生活環境 등이 質·量面에서 만족스럽게 改善되지 못하는 데 대한 不滿이 부분적으로 觸發하게 되었다. 더우기 人口構造의 變化와 醫學技術의 발달은 老齡人口를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급속한 工業化는 都市와 農村에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惹起케 함으로써 物質的 產出總量을 확대하는 데 重點을 두었던 成長政策을 이제는 國民 各個人의 所得과 건강한 생활을 保障하고, 精神의 生活環境의 便益도 增進할 수 있는 社會開發政策과 並行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어느 國家에 있어서도 經濟成長이 貧困問題로 완전히 解消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國民의 不滿을 加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國家의 資本蓄積期間이 짧았기 때문에 暫定的이나마 福祉보다는 成長政策에 優先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國家開發의 窮極의 目的이 國民生活의

福祉向上에 있는 이상, 國家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政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國民生活의 需要에는 크게 大別하여 人間의 生命維持에 필요한 最低生計需要와 國民이던 누구나 필요로 하는 健康, 教育, 住居生活環境 등의 基本生活需要, 그리고 그 이상의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需要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不充分하고 國家財政이 貧弱하여 政策遂行에 制約을 받는 狀況下에서는 國家는 一部 低所得國民에 대한 最低生計需要를 保護하는 데만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大多數國民을 위한 基本生活需要와 그 이상의 福祉需要를 충족하는 문제는 점차 國家의 중요한 政策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國民生活需要를 充足 내지 向上시킬 수 있는 政策道具로서 國民的 連帶(national solidarity)와 所得再分配(income redistribution)의 機能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方案의 하나로 社會保障制度發展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社會保險의 年金制度는 國民의 日常生活 가운데 老齡(退職), 不具·廢疾, 死亡 등의 危險 때문에 발생하는 所得의 喪失이나 中斷時를 대비하여 所得을 保障하는 手段으로 마련된다.

年金制度는 運營主體에 따라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支給方法에 따라 年金과 一時金으로 구분된다. 公的年金制度는 國家 또는 法律로 정한 特殊法人이 運營主體가 되어 強制加入을 원칙으로 法定의 年金給與를 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私的年金은

事業場勤勞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企業年金이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各企業이 運營主體가 되고 任意加入과 一時金支給을 많이 채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所得保障制度로는 1960년부터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 教職員 등을 대상으로 하는 公的年金制度가 점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適用人口는 全國民의 2.3%에 不過하고, 이나마도 一般勤勞者의 退職金性格에 가까운 一時金給與形式으로 주로 運用되어 國民의 長期的 生活保障手段으로는 未洽한 실정이다. 그리고 一般勤勞者에 대해서는 勤勞基準法에 의한 退職金制度가 退職後의 生活保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 長期的 保障의 年金給與形態가 아닌 短期的인 一時金支給方式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所得保障의 役割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一部企業體는 退職給與充當金을 대부분 社內留保하여 運營資金으로 轉用함으로써 企業倒産이나 閉鎖時 退職金支拂保障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社會問題化되고 있다.

다행히 政府에서는 1973년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을 修正·補完하여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 중에 이 制度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 準備作業을 추진하고 있어 큰 期待를 모으고 있다. 이 制度는 國民 各階層의 最低生活 이상을 保障하는 長期的 所得保障制度인 만큼, 그 동안의 社會·經濟的 與件變化와 他關聯制度와의 關係를 고려하여 制度內的인 問題點은 물론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檢討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施行準備段階로서 年金制度實施經驗이 없기 때문에 外國의 事例를 制度樹立에 參考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도움을 줄 수

1) 朴昇, 『社會福祉制度의 段階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經濟科學審議會誌, 1981. 9. 5, pp.100~101.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 外國의 年金制度, 특히 老齡(退職), 廢疾, 死亡에 대한 所得保障制度의 運營方法, 各種 給與의 受給資格, 給與內容 및 水準, 그리고 年金給與費의 比重 등을 比較·分析하여 앞으로 施行할 우리나라 年金制度 立案過程에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II. 運營形態와 適用對象

1. 公的年金制度의 運營形態

各國의 社會保障制度는 그 社會의 人口構造, 工業化水準, 國民經濟 및 社會的 與件 등

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2次 世界大戰의 終熄과 함께 各國의 社會保障制度는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國際景氣의 後退와 不況의 연속으로 各國은 격심한 인플레이에 직면하게 되어 社會保障制度發展에 轉換期를 맞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保險의 年金制度를 導入·實施하고 있는 國家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9年 현재 어떤 형태이든 社會保障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134個國중 91.0%인 122個國이 老齡·廢疾·死亡 등의 長期的 危險에 대비한 所得保障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³⁾, 이 중에서 순수한 社會保險形態(social insurance system)로 年金制度를 운영하고 있는 國家가 75.4%인 92個國을 차지하고, 一時金給與形態인 積立基金制度(provident fund system)로 운영하는

〈表 1〉 年金制度 運營形態別¹⁾ 實施國家數(1979)

1人當 GNP (U.S. \$)	社會保險	社會扶助	一時金 ²⁾ 支給制度	複合制度 ³⁾	小 計	特殊職域 ⁴⁾ 年金制度만 實施	合 計
500弗 미 단	24	—	9	—	33	8	42
500~1,000	13	—	4	—	17	2	19
1,000~2,000	20	1	2	1	24	1	25
2,000~3,000	10	1	—	1	12	—	12
3,000~5,000	8	—	1	2	11	—	11
5,000~10,000	10	2	—	2	14	—	14
10,000弗 이 상	7	—	—	4	11	—	11
計	92	4	16	10	122	12	134

註: 1) 各 國家의 老齡·廢疾·死亡에 대한 所得保障制度의 運營形態인.

2) 積立基金制度(provident fund system)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인.

3) 社會保險과 社會扶助形態를 複合의으로 運營하는 制度, 즉, 被傭者에 對해선 社會保險, 一般住民에게는 社會扶助形態로 주로 運營하고 있음.

4) 一般被傭者에 對해선 年金制度를 실시하지 않고, 오직 公務員, 軍人 등의 公職者에 對한 年金制度만 실시하는 國家인.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Research Report, No. 54, Washington, D.C., May 1980.

World Bank, *1980 World Bank Atlas: Population, Per Capita Product, and Growth Rates*, Washington, D.C., 1980.

2)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Evolution of Social Security and ISSA Activities 1978~1980*, XXth General Assembly Report I, Geneva, 1980, pp. 1~4.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Research Report, No. 54, Washington, D.C., May 1980.

國家는 13.1%(16個國)이며, 4個國은 社會扶助形態(social assistance system), 그리고 10個國은 綜合年金形態(universal pension system)인 社會保險과 社會扶助의 複合制度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公務員 등의 特殊職種 年金制度만을 실시하고 있는 國家는 12個國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1人當 國民總生産(GNP)이 1,000弗 이상인 國家는 우리나라뿐이며, 나머지는 1,000弗 미만의 低開發國들이다(表 1 참조).

社會保險形態로 年金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國家는 被傭者 중심의 年金保險制度가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이 制度에서는 주로 勞·使負擔으로 財源을 調達하고, 國家에서는 補助金을 支給한다. 社會保險은 國家의 獨占管理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給與費의 算定은 所得再分配機能을 갖도록 報酬比例方式과 均等方式을 折衷하고 있는 것이 通常이다. 우리의 現行 3個 公的年金制度(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 年金制度)는 報酬比例의 給與算定과 一時金支給方式을 택하고 있어 社會保險의 特徵, 즉 所得再分配機能 등은 微弱한 실정인데 반해, 앞으로 一般勤勞者를 대상으로 실시될 國民福祉年金制度에서는 西歐先進國과 같은 社會保險形態에 立脚하고 있다. 社會保險制度를 운영하는 國家 중 2次大戰 이전부터 制度를 導入·實施한 國家들은 年金受給權者가 급속히 증가하여 給與支출이 증대되고 國庫補助額이 增加되어 國家財政運營上 심각한 問題가 擡頭되고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가 심한

國家에서는 財政壓迫이 더욱 加重되어 年金制度運營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로서 칠레의 경우는 극심한 인플레이로 인하여 歐洲國家의 典型的인 社會保險方式으로 운영하던 年金制度를 1981년부터는 私保險制度와 같이 民間의 競爭的 複數管理方式으로 轉換하였다. 이 制度는 政府財政에 의한 補助制度를 폐지하고, 使用者負擔金까지도 제외토록 改正하였기 때문에 受益者負擔의 個人年金化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政府保證에 의한 最低年金水準만을 法的 保障하도록 하고 있다⁴⁾.

濠洲, 뉴질랜드와 같이 社會扶助形態의 制度를 導入하고 있는 國家는 國家財政에만 依存하게 되어 있고 最低生計費保障에만 重點을 두고 있으나 莫大한 租稅收入이 並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賦存資源이 없는 國家에서는 實施하는데 큰 難點이 있다. 또한 英國과 캐나다 등의 國家는 被傭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社會保險形態, 一般住民에 대해선 社會扶助形態로 實施되는 複合形態의 年金制度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年金受給者가 增大하여 莫大한 國家財政이 投入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給與水準이 낮기 때문에 財源調達方法과 給與額支給水準을 職能別 社會保險形態로 改善코자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는 一時金支給方式으로 운영되는 中央積立基金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強制貯蓄의 意味가 강하고 國家에서 一定利子を 補填하고는 있으나 國家負擔이 거의 없고 所得再分配機能이 거의 없기 때문에 國民의 所得保障策으로는 未洽하다. 그러나 이 制度는 開發途上國에서 投資資金調達을 主要目的으로 많이 導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려는 國民福祉年金制度

4) Barbara E. Kritzer, "Chile Changes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Bulletin*, 44(5): 33~37, May 1981.; Robin Arnold, "Social Security Reform in Chile", *Benefits International*, February 1981, pp. 2~8 참조.

는 社會保險形態의 年金制度이기 때문에 政府에 의한 強制貯蓄의 意味는 배제할 수 없으나 所得再分配機能이 강하고⁵⁾ 給與方法도 最低生活保障에 力點을 두고 있어 典型的인 社會保障制度라고 볼 수 있으며, 運營形態는 國家管掌이 될 것이며, 制度가 成熟되는 段階까지는 계속 累積基金이 증가될 것으로 展望된다.

2. 適用對象者의 範圍

各國年金制度의 適用對象者는 先進國일수록 全國民을 包括的으로 적용하고 있고, 開發途上國은 正規所得活動 중인 勤勞者를 중심으로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특히 많은 國家에서는 公務員, 鑛夫, 鐵道員, 船員 등에 대해 별도의 法으로 制度化하고 있고, 行政管理上 어려움이 많은 家族從事者, 日傭勤勞者, 農林從事者 및 自營者 등은 制度의 初期段階에서는 적용을 排除하고 있으나 통상 制度實施後 10~20년이 經過하여 制度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段階的

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政策을 택하고 있다.

國際社會保障協會(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서 各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84個 年金制度를 조사한 資料⁶⁾에 의하면 共產國家의 7個制度를 제외한 77個制度가 被傭勤勞者를 중심으로 制度가 運營되고 있으며, 自營者나 地域住民은 그 다음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어느 國家에서나 성공적인 年金制度 運營을 위해서는 財源調達이 容易하고 適用對象者의 行政管理가 간편하여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으며, 勤勞者 이외에 脆弱階層을 優先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社會的 要求와는 관계없이 年金制度가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被傭勤勞者의 年金制度에서는 一定額 이상의 高所得勤勞者에게는 課稅所得의 上限을 적용하여 適用排除하거나 法定의 一定年齡階層만을 制度에 적용하기도 하며⁷⁾ 반면에 低所得勤勞者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⁸⁾, 企業(事業場)의 從業員 規模에 따라 一律的으로 制度에 加入시키는 國家⁹⁾도 있는데, 이와 같은 適用事業場에 대해서는 年齡이나 所得水準 등에 대한 制限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上述한 바와 같이 被傭勤勞者 중에서 公務員, 鑛夫, 鐵道員, 船員, 自營者 등의 特殊職種者에 대해서는 別途의 法으로 制度를 運營하는 國家가 대부분이며, 國家에 따라서는 銀行員¹⁰⁾, 石油業(멕시코), 사탕수수 農場從事者(臺灣) 등을 特殊制度로 運營하기도 한다.

社會保障을 실시하는 國家들은 雙務協定을 통해서 相對國에 滯留하고 있는 自國民을 保護하고 있는데, 특히 年金制度에서는 이와 같은 協定이 특별히 마련되지 않아도 外國人을 포함한 國內居住勤勞者에 대해서는 制度에 加入시켜 혜택을 賦與하기도 한다¹¹⁾.

- 5) 延河清,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와 所得再分配效果」, 『韓國開發研究』, 第3卷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6)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Factors Entering into the Calculation of Pension Amounts and Their Influence on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of Insured Pensions*, XXth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80.
- 7) 濠洲 등 15個國(濠洲,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日本, 말타, 마우리티우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英國)은 14歲 혹은 18歲 이상 60歲 혹은 65歲의 國內居住者를 制度에 加入시키고, 法定高所得者는 適用에서 除外한다.
- 8) 西獨, 오스트리아, 도미니카共和國, 東獨, 가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 9) 日本, 臺灣, 가나, 이라크, 탄자니아, 우간다 등은 5人 이상, 인디아, 마우리티우스,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등은 10人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스와질랜드는 20~30人 이상, 인도네시아는 100人 이상 事業場에 대해 一律的으로 적용함.
- 10) 볼리비아, 멕시코, 파라과아이, 우루구아이 등의 中南美 國家에서 주로 採擇하고 있음.
- 11) 英國, 아르헨티나, 濠洲, 볼리비아, 캐나다, 덴마크, 엘살바도르, 그리스, 이란, 이라크, 네덜란드, 니카라과아이, 파라과아이, 베네수엘라 등.

1973년에 制定된 우리나라의 國民福祉年金法에서는 18歲 이상 60歲 미만의 全國民을 適用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年金制度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初期에는 被傭勤勞者를 중심으로 실시하다가 점차 모든 國民에게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事業場 規模에 따라 一律적으로 적용하는 勤勞者中心의 年金制度가 실시되더라도 低所得勤勞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强制適用에서 排除하고 있으며¹²⁾, 鑛夫, 船員, 航空塔乘員 등의 特殊職種者에 대하여는 社會保障發展의 初期段階로서 別個制度로 이와 類似한 制度가 立案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制度로 운영하지 않고 年金受給年齡을 5年 短縮하여 支給하는 特惠를 賦與하고 있다¹³⁾. 그러나 特殊職種者의 資格要件이나 職種選定은 釀出料 및 給與水準과 密接하게 關連되므로 勤勞者間의 衡平을 고려하여 選擇의으로 制度化되어야 할 것이며, 外國人의 加入資格은 國家間의 協定締結時를 考慮하여 相互利益을 追求할 수 있도록 法的 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給與種類와 資格要件

各國의 年金制度에 있어서는 長期的 危險에는 年金으로, 短期的 危險에는 一時金이나 手當 등으로 支給하는 現金給與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給與種類에는 老齡年金, 障害年

金, 遺族年金 등이 基本的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 年金의 受給資格要件은 各國의 사정에 따라서 多樣하게 制度化되고 있다. 특히, 老齡年金의 受給資格要件은 國家間에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各國의 社會·經濟的 與件에 相應한 조건들이 각기 달리 規制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受給資格要件은 年金受給開始年齡, 制度加入期間, 退職與否에 따라 각각 다르게 制度化된다.

老齡年金의 受給開始年齡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時金支給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를 제외한 106個의 年金制度實施國 중 男子의 경우 44.3%에 해당하는 47個國이 60歲를 受給年齡으로 制度化하고 있으며, 27.4%인 29個國이 65歲인데 반해서 女子의 경우는 55歲가 39.6%(42個國)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0歲로서 33.0%(35個國)이다. 이들 全調查國家의 平均受給資格年齡은 男子 60.7歲, 女子 58.4歲로 分析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所得이 높은 國家일수록 老齡年金受給年齡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年金制度導入期間이 길고, 老齡化人口比率이 높으며, 平均壽命이 긴 歐美先進國에서는 受給年齡이 男子 65歲, 女子 60歲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한편 老齡年金의 受給資格年齡이 男女가 동일한 경우가 年金制度實施國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의 대부분이 西歐先進國에 속하고, 나머지 國家는 男子에 비해 女子가 5歲정도 낮은 年齡으로 制度化하고 있다. 즉, 男子보다 女子의 受給年齡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國家가 47.3%에 달하고, 特殊職種이나 危險職種從事者에 대해서 受給年齡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國家도 36.3%나 되고 있다. 그리고 稼得活動無能力者 및 失業者 등에게 年

12) 1973年 制定法 第7條에 의하면 15,000원 이하의 月報酬勤勞者는 除外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가 있을 때는 加入할 수 있다.

13) 老齡年金受給年齡이 一般勤勞者의 경우 60歲이나 이들 特殊職種者에게는 55歲로 하고 있음.

〈表 2〉 1人當 GNP別 老齡年金受給年齡別 年金制度實施國家數¹⁾(1979)

(단위: 個國)

1人當 GNP 受給年齡(歲)	500 弗 미 단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0,000	10,000弗 이 상	合 計
男 子 ²⁾	(57.6)	(60.0)	(60.9)	(61.3)	(61.8)	(62.1)	(64.0)	(60.7)
70	1	—	—	—	—	—	—	1
66~67	—	—	—	—	1	—	3	4
65	—	2	7	5	3	6	6	29
61~63	—	—	—	1	1	—	1	3
60	9	9	12	5	4	8	—	47
58	1	—	—	—	—	—	—	1
55	13	2	3	—	1	—	—	19
50	—	—	—	1	—	—	1	2
女 子 ²⁾	(56.2)	(57.7)	(58.4)	(58.5)	(58.8)	(59.3)	(62.4)	(58.4)
70	1	—	—	—	—	—	—	1
66~67	—	—	—	—	1	—	2	3
65	—	—	3	3	2	2	3	13
62~63	—	—	—	1	—	—	3	4
60	4	8	10	2	1	8	2	35
57~58	1	—	—	—	1	—	—	2
55	16	4	8	5	5	4	—	42
50	2	1	1	1	—	—	1	6
國 家 數 計	24	13	22	12	10	14	11	106

註: 1) 老齡·廢疾·死亡에 대한 年金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로서 一時金支給制度인 provident fund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國家와 特殊職域年金制度만을 실시하고 있는 國家는 除外하였음.

2) () 안의 숫자는 各 GNP 수준에 속하는 國家들의 老齡年金受給年齡의 平均値인.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World Bank, *1980 World Bank Atlas: Population, Per Capita Product, and Growth Rates*, Washington, D.C., 1980.

〈表 3〉 一般年金制度에서 年金受給年齡을 낮추는 경우의 國家數

(단위: 個國)

	歐美國家 ¹⁾	舊制度國 ²⁾	新制度國 ³⁾	計	調査對象國家 에 대한 比率 (%)
女 子	18	18	7	43	47.3
特殊職 및 危險職從事者	16	14	3	33	36.3
無能力者 및 失業者	8	12	9	29	31.9
減額年金資格賦與	5	5	1	11	12.1
調 查 對 象 國 家	30	39	22	91	—

註: 1) 유럽 및 北美國家

2) 1966年 이전에 制度를 導入한 國家

3) 1966年 이후에 制度를 導入한 國家

資料: Margaretha Aarnio, "Some Data Concerning Pensionable Age in the General Pensions Schemes of Different Countries",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eneva, 1978, pp. 13-21.

齡特惠를 주는 國家는 31.9%, 減額年金給與時에 年齡基準을 낮추는 國家가 12.1%에 달하고 있다(表 3 참조).

完全老齡年금을 支給받기 위해서는 一定期間이상 制度에 加入하고 釀出料를 納付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國家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10~20年の 加入期間을 설정하고 있으나 20年 이상¹⁴⁾이나 10年 미만¹⁵⁾의 期間을 설정하고 있는 國家도 있다. 加入期間에도 男女間의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東歐共產圈國家들로서 男女間에 5年の 차이를 두고 있다. 즉, 男子 25年, 女子 20年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소련 등이며, 男子 20年, 女子 15年인 경우는 中共和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와 우루구아이는 30年 및 25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男子 15年, 女子 13年으로 2年の 차이를 두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資格期間을 充足하지 못할 경우에도 受給年齡에 도달하게 되면 減額年금을 支給하는 國家가 많다.

被傭勤勞者를 대상으로 하는 年金制度의 경우 退職與否를 資格要件으로 賦與하기도 하는데 <表 4>에서와 같이 完全退職 즉, 雇傭中斷을 前提로 老齡年금을 支給하는 國家가 91個 國家 중 58.2%에 달하고, 受給年齡에 도달하여도 退職하지 않으면 減額하여 支給하는 國家가 14.3%, 退職與否와는 상관없이 完全年금을 支給하는 國家는 27.5%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老齡年金受給年齡을 超過하여 退

<表 4> 一般年金制度의 年金受給資格에서 退職與否에 따른 國家數

	歐美 ¹⁾ 國家	舊制 ²⁾ 度國	新制 ³⁾ 度國	計	比率 (%)
完全退職	12	25	16	53	58.2
未退職時 減額	7	6	—	13	14.3
退職과 無關	11	8	6	25	27.5
計	30	39	22	91	100.0

註: 1) 유럽 및 北美國家

2) 1966年 이전에 制度를 導入한 國家

3) 1966年 이후에 制度를 導入한 國家

資料: Margaretha Aarnio, "Some Data Concerning Pensionable Age in the General Pensions Schemes of Different Countries",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eneva, 1978, pp. 13-21.

직하는 경우 年金支給額을 上向調整하는 國家도 있으며 同一國家內의 年金制度라 할지라도 制度間, 對象者間에 따라 資格要件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國民福祉年金法에서는 老齡年金受給年齡을 男子 60歲, 女子 및 特殊職種者는 55歲로 規定하고 있으며, 加入期間은 男女 모두 20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退職을 前提로 完全年금을 支給하나 退職하지 않고 受給年齡에 도달하면 65歲(女子 등은 60歲)까지 在職者老齡年금을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加入期間을 充足하지 못하고 10~20年 사이에 退職하고 60歲에 達한 경우에는 減額年금을 支給하게 된다. 그리고 10年미만 加入한 者가 中途脫退한 경우에는 返還一時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老齡年金의 特例(法 附則 第 3條)에는 制度施行當時 資格期間을 充足할 수 없는 對象者 중 40歲이상 55歲미만(단, 女性과 特殊職種者는 35歲이상 50歲미만)者는 5年 내지 14年 4個月만 加入하던 年金受給資格을 賦與하도록 되어 있다.

14)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루마니아, 우루구아이 등의 國家는 30年, 알바니아, 코스타리카는 25年, 프랑스 37.5 年, 벨기에는 45年을 加入해야 함.

15) 이디오피아, 가나,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은 5年, 아이보리코스트는 3年을 加入期間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40歲 미만의 加入者나 制度實施 이후 加入한 40歲 이상의 加入者가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때와 競合하게 되고 給與水準의 隔差가 심하게 되므로¹⁶⁾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年金受給年齡은 外國의 경우와 같이 制度草創期에는 60歲(女子 55歲)로 함이 타당하나 制度가 成熟되면 점차 65歲까지 延長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障害年金을 받기 위해서는 各國 모두 障害程度와 加入期間 혹은 年齡을 要件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完全障害年金을 받는데는 完全勤勞能力喪失¹⁷⁾이나 勤勞能力이 2/3 이상 減退¹⁸⁾되었을 때 支給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勤勞能力이 50%만 喪失되어도 完全障害年金을 支給하는 國家도 一部 있다¹⁹⁾. 대부분의 國家들은 障害年金額을 障害程度나 加入期間에 따라 差等支給하고 있는데 支給下限의 障害程度는 보통 50%의 勤勞能力喪失者로 정하고 있으나 一部國家에서는 이

以下에서도 障害年金을 減額支給하고 있다²⁰⁾. 障害年金을 支給받기 위한 加入期間은 보통 적용되지 않으나 1年 이하²¹⁾ 혹은 3~5年²²⁾의 釀出料納入期間을 적용하는 國家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10年 이상을 적용하는 國家²³⁾도 있다.

우리나라의 國民福祉年金制度에서는 障害等級을 3等級으로 나누어 支給하는데 完全勤勞能力喪失時의 障害年金을 100%로 하여 등급에 따라 差等支給하고, 加入期間은 1年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外國의 경우와 比較하여 調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醫療保險法(第30條)에 의하면 療養給與期間을 6個月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國民福祉年金法의 障害年金은 疾病發生 2年經過後에야 支給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個月~2년까지의 醫療費支給保障이나 生計保障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現行 產災保險에서도 年金保障을 하고 있으나 受惠條件, 給與水準 등에는 年金制度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相互調整될 수 있도록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IV. 給與水準

年金給與額은 그 나라의 經濟狀態, 國民의 生活程度에 따라 年金額算定基礎를 平均賃金(所得), 最低生計費, 査定賃金²⁴⁾ 등으로 각각 相異하게 制度化하고 있으며, 計算方法도 定額으로 하는 國家와 定率로 하는 國家가 있기 때문에 一律的인 尺度에 의해 給與水準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國民福祉年金制度和 같은 社會保險形態로 制度化

16) 閔載成, 「國民福祉年金制度 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pp. 187~208 참조.

17) 알제리, 알바니아, 브라질, 中共, 쿠웨이트, 남아연방, 사이프러스, 덴마크, 프랑스, 日本, 자메이카 등.

18) 파키스탄, 터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란 등.

19) 멕시코, 에쿠아도르,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등.

20) 인도(25%), 네덜란드(15%), 日本(30%),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니카라과아 등(33%), 핀란드(40%) 등의 國家는 50% 이하의 勤勞能力喪失時에도 減額年金을 支給한다.

21) 아르헨티나, 라틴, 벨기에, 카메룬, 몽고, 日本,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22)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핀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터키 등.

23) 中央아프리카共和國, 파키스탄 등.

24) 平均賃金(所得)算定은 勤勞者(自營者 등)의 賃金(所得)의 平均値로 計算하거나 加入者個人의 一定期間 동안의 平均賃金(所得)을 基準으로 하고, 最低生計費는 法定의 最低生活費(minimum living cost)이며 査定賃金(assessed wages)은 勤勞者의 賃金과 國民平均所得의 比率로 每年 算定됨.

〈表 5〉 19個國의 老齡年金 給與方法 및 給與額水準(1979)

	年金算定基準(A)	老齡年金計算方法 ¹⁾	加給年金支給方法	年金額 ²⁾ 上	年金額 ²⁾ 下	生計保護 ³⁾ 手	年金額調整基準
오스트리아	最終5年間平均所得	$A \cdot \{30 + (0.6 \sim 1.5)\} / 100$	定率	$79.5\% + D$	$40\% + D$	ITA	平均賃金
벨기에	平生平均所得	$A \cdot \{60 - 5(65 - X)\} / 100, 60 \leq X \leq 65$	定率	75%	35%	MTA	賃金・物價・其他
브라질	最終3年間對象者平均所得	$A \cdot (70 + n) / 100$	—	95%	70%	MTA	最低賃金
캐나다	平生平均所得	$0.25A + (142\text{弗까지})$	定額	185.3弗	—	ITA	物價指數
이집트	最終2年間平均所得	$A \cdot 2.22n / 100 + LS$	—	80%	17.9弗	—	—
프랑스	最高10年의 平均所得	$A \cdot \{25 + 5(X - 60) / 100, 60 \leq X \leq 70$	子女(定率), 配偶者(定額)	$75\% + D$	—	MTA	賃金
西獨	査定賃金	$A \cdot 1.5n / 100 + \text{遲滯年金}$	定額	—	—	—	賃金・經濟變化
그리스	最終2年間平均所得	$A \cdot \{(30 \sim 70) + (2.5 \sim 25)\} / 100$	婦(定額), 子(定率)	適正賃金의 25日分	145.3弗 + D	—	—
이스라엘	國民平均賃金	$A \cdot \{16(\text{夫婦는 } 24) + 2n\} / 100$	定率	84%	—	ITA	賃金・物價
이탈리아	最高3年의 平均所得	$A \cdot 2n / 100$	定額	$80\% + D$	$146.8\text{弗} + D$	MTA	賃金・生計費
日本	平生平均所得	$0.1nA + 8.4n\text{弗}$	定額	—	—	ITA	生計費
멕시코	250週의 平均所得	$A \cdot \{(35 \sim 45) + (1.25 \sim 1.50)n\} / 100$	定率	100%	44弗	—	最低賃金
네덜란드	定額	439.5(1 - 0.02m)弗	定額	$439.5\text{弗} + D$	—	—	賃金
포르투갈	最終5年間平均所得	$A \cdot 2n / 100$	定率	$70\% + D$	$30\% + D$	—	生計費
스웨덴	最終2年間平均所得	$A \cdot (50 + 2n) / 100, 11 \leq n \leq 35$	—	100%	196.7弗	—	賃金・物價・其他
스위스	年平均所得—基本額	$0.6A \cdot \{1 + 0.006(70 - X)\}, 65 \leq X \leq 70$	定率	—	—	—	物價
스위스	年間平均所得	$(1.67A + 80 \cdot \text{月最低賃金}) / 100$	定率	$100\% + D$	$302.4\text{弗} + D$	ITA	物價・賃金
터키	最高3年間平均所得	$A \cdot \{70 - 0.5(25 - n)\} / 100$	—	309.1弗	92.4弗	—	最低賃金
美國	定額	$A\{1 + 0.01(72 - X)\}, 65 \leq X \leq 72$	定率	$513.8\text{弗} + D$	$121.8\text{弗} + D$	MTA	生計費

註: 1) A: 年金算定基準, X: 加入年數, LS: 一時金, m: 離出料未納期間

2) 年金額上・下限空, 加給年金(dependents' supplement; D)을 포함하지아니하며, 本表의 金額은 美國 달러로 換算한 것임.

3) ITA: income-tested allowance(所得調査手當), MTA: means-tested allowance (家計資産調査手當)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前掲誌.

되고, 年金制度實施期間이 20年 이상으로 制度가 定着化되어 있는 19個國을 任意로 選定하여 年金額의 算定基準, 支給方法 등을 檢討하여 國際的 動向을 比較分析하기로 한다.

老齡·障害·遺族年金額의 算定基礎가 되는 年金額算定基準은 一般적으로 平均所得이나 平均賃金を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와 美國 등에서는 法定額을 基礎로 年齡이나 釐出料納入期間에 따라 年金을 支給한다. 加入者個人의 平均所得을 기초로 하더라도 各國家에서는 加入最終年度 이전의 2~5年間の 平均賃金を 주로 사용하여 全生涯를 通하여 一時에 높은 所得이 있는 경우를 排除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는 勤勞期間동안의 最高賃金を 받는 3年 혹은 10年의 平均値를 기준하여 全勤勞期間의 年金額水準을 保護하기도 한다(表 5 참조).

1. 老齡年金

老齡年金額은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金額算定基準에 의해 加入期間, 年齡, 扶養家族數 등에 따라 差等支給되고 있는데, 一般적으로 年金額算定基準이 被保險者의 平均所得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年金額은 주로 報酬比例의 성격으로 支給된다. 그런데 브라질은 最終 3年間 對象者平均所得을 基礎로 年金額을 算定하고, 이스라엘은 國民平均賃金を 基準함으로써 被保險者의 報酬水準과는 상관없는 均等方式이 채택되고 있다. 또 이집트, 日本, 스위스 등은 報酬比例와 均等方式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國家가 加入期間에 따라 年金額을 差等支給하고 있으나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美國 등에서는

加入期間과는 관계없이 受給年齡에 따라 差等支給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는 年金額의 上限과 下限을 설정하고 있는데, 上限은 年金額算定基準의 100%를 超過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나 定額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下限은 대부분 最低生計費를 고려하여 定額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老齡年金이나 障害·遺族年金에 扶養家族補助金(dependents' supplement)이란 加給年金을 加算支給하고 있는데, 이는 配偶者나 子女數에 따라 定額 혹은 定率로 결정되고 있다.

한편 老齡年金의 受給要件을 충족할 수 있는 加入者나 給與額水準이 낮은 受給權者의 扶養家族에게는 一時金を 支給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方法中에 한 가지를 通常 給與한다. ① 加入期間이 未達되는 者에게 寄與金返還(refund of contribution) ② 被保險期間에 따라 支給額이 결정되는 老齡一時金(old-age settlement), ③ 資産收入과 年齡에 따라 支給하는 家計資産調査手當(means-tested allowance), ④ 所得에 따라 支給할 수 있는 所得調査手當(income-tested allowance), 그리고 ⑤ 最低生計費 이하의 給與를 받는 者를 補助하기 위한 老齡補助手當(old-age allowance) 등이 있다. 이와 같은 給與內容도 나라에 따라 相異하나 先進國의 경우는 家計資産調査手當 혹은 所得調査手當으로 대부분 支給하고 있다.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法에서는 老齡年金額은 最終 3年間 平均報酬月額과 全加入者平均報酬를 基準으로 算定하는 報酬比例部分과 均等部分을 동시에 적용해 所得再分配效果를 감안하고 있고, 年金額上限은 最終 3年間 平均報酬의 70%를 上廻하지 못하게 하고 下限

規定은 없다. 그리고 加給年金은 配偶者나 子女數에 따라 定額으로 加算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家計資産調査手當 등은 支給하지 않으며, 그대신 中途脫落者를 위한 返還一時金制度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外國에 비해 年金額支給上限이 비교적 낮을 뿐 아니라 下限設定도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制度를 補完할 때에는 外國의 例나 現行 公務員年金制度의 水準²⁵⁾과 비교하여 年金額上限線을 上向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最低生計를 유지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로서 年金額支給下限도 新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定額制로 되어 있는 加給年金도 定率制로 轉換시키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障害年金과 遺族年金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障害年金을 業務外의 原因에 의해 발생한 障害에 대해 支給하는데, 完全障害年金은 勤勞能力을 완전히 喪失하거나 勤勞能力이 2/3 이상 減退되어야 하고, 그 이하의 障害에 대해서는 部分障害年金(partial invalidity pension)을 支給한다. 完全障害年金額은 일반적으로 老齡年金額과 동일하며 部分障害의 경우는 障害程度에 따라 年金額에 대한 比率로 減額支給하거나 一時金으로 支給하기도 한다. 障害年金額의 上·下限은 老齡年金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年金額下限은 주로 定額制를 채택하고 있다. 障害年金受給權者에게도 老齡年金과 같이 加給年金을 支給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많은 國家에서는 障害治療나 再活을 위한 常時 保護加給額

(constant-attendance allowance)으로 年金額의 20% 이상을 별도로 支給하는 경우가 많다(表 6 참조).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法에서는 障害年金을 3等級으로 나누어 1級障害者에게는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을 加算하고(老齡年金額과 동일), 2級障害者는 基本年金額의 50%, 3級은 이의 30%에 加給年金을 加算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再活治療費補助 등은 配慮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障害年金額水準이 外國에 비해 낮으며, 最低生計費保障을 위한 下限設定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調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再活治療를 위한 療養費支給을 補助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遺族年金은 年金受給權者나 加入者가 死亡한 경우에 보통 다른 條件없이 被保險者의 遺族에게 支給하고 있다. 支給對象者(遺族)는 配偶者나 孤兒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브라질, 이집트, 스페인 등에서는 父母나 兄弟·姉妹도 遺族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日本은 이외에도 祖父母와 孫子女도 포함시키고 있다. 未亡人年金은 老齡 및 障害年金額의 50~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國家가 대부분이나 이집트, 美國 등에서는 100%를 支給하기도 한다. 孤兒年金은 16 내지 18歲 이하의 孤兒에게 支給되나 일반적으로 年金額의 20% 수준인데, 兩親 모두가 없는 完全孤兒에게는 이보다 1.5~2倍 정도 높게 支給하고 있다. 그러나 遺族年金(未亡人年金 및 孤兒年金 포함)에서는 家口當 支給上限과 下限을 설정하고 있는데, 上限은 老齡 및 障害年金額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國家가 대부분이며, 下限은 定額으로 策定하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

25) 현행 公務員年金法의 退職年金額支給上限은 退職當時 月報酬의 76%로 되어 있음.

〈表 6〉 19個國의 障害年金受給資格 및 給與水準(1979)

	完全年金受給資格		給與水準	年金額上限	年金額下限	常時 保護 加給額 ²⁾	減額 障害年金
	障害程度 ¹⁾	加入期間					
오스트리아	50%	5年	老齡年金과 동일	79.5%	40%	年金의 50%	—
벨기에	2/3	6個月	所得의 43.5~65%	1,058弗	401弗	34.5~69.0弗	—
브라질	永久不能	1年	對象者 平均賃金の (70+n)%	100%	70%	—	一時金支給
캐나다	不能退職	5年	45.1弗 + 退職年金의 75%	183.6弗	—	—	—
이집트	永久不能	3個月	平均所得의 2.22n%	80%	17.9弗	—	障害程度에 따른 一時金
프랑스	永久不能	1年	平均所得의 50%	507.3弗	121.1弗	所得의 40%	2/3 이상 障害時
西獨	50 및 100% ³⁾	5年	査定賃金の n 및 1.5n% ³⁾	—	—	—	—
그리스	67%	1,500日	老齡年金과 동일	—	145.3弗	年金의 50%	33% 이상 障害時
이탈리아	100%	2年	國民平均賃金の 25%	—	—	—	50% 이상 障害者
이탈리아	2/3	5年	老齡年金과 동일	80%	146.8弗	—	—
日本	永久不能	6個月	老齡年金과 동일	—	203.1弗	年金의 25%	30% 이상 障害時
멕시코	50%	150週	老齡年金과 동일	100%	44.0弗	年金의 20%	—
네덜란드	80%	—	基本年金의 80%	—	—	基本年金의 20%	15~80% 障害時
포르투갈	2/3	3年	老齡年金과 동일	70%	30%	最低賃金の 20%	6~36個月 加入者
스페인	100%	1,800日	所得의 55~100%	100%	169.7弗	年金의 50%	33% 이상 障害時 一時金
스웨덴	5/6	3年	對象者 平均所得의 2n%	60%	—	基本年金의 60%까지	50% 이상 障害時
스위스	2/3	1年	老齡年金과 동일	100%	302.4弗	最低年金의 20~80%	1/3 이상 障害時
터키	2/3	5年	老齡年金과 동일	309.1弗	92.4弗	所得의 10%	—
美國	所得喪失	—	定額制	513.8弗	121.8弗	—	—

註: 1) 完全年금을 受給받기 위한 最小限의 稼働能力喪失程度를 나타냄.

2) constant-attendance allowance를 말함.

3) 一般障害는 100%, 職業上 障害는 50%의 所得能力減退時 完全年금을 支給하고, 그 給與額은 査定賃金の 1.5n% 및 n%임.

* 本表의 金額은 美國달러로 換算한 것이며, n은 加入期間임.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前掲書.

고 遺族年金受給者에게 많은 國家가 葬祭費를 一時金으로 支給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西獨,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年金制度에서 支給하지 않고 醫療保險制度에서 支給하고 있다(表 7 참조).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法에서의 遺族年金受給者는 配偶者, 子女, 父母, 祖父母, 孫子女로 하고, 遺族年金額은 基本年金額을 基準으로 加入期間에 따라 40~50% 수준에 加給年金을 加算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上限과 下限의 설정은 없으며, 葬祭費規定도 없다. 다만 葬祭費는 醫療保險制度에서 附加給與로 支給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遺族年金額은 外國水準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

에 生計保障手段으로는 未洽한 실정이며, 年金額下限도 설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再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遺族範圍도 大家族制度의 傳統을 考慮하여 制度가 樹立되고 있으나 社會變動趨勢를 감안하여 配偶者, 子女 및 父母까지만 限定하여 실질적인 遺族年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各 遺族에 따라 年金額을 差等支給할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年金額의 調整

인플레이에 대비한 年金受給權者의 實質購買力을 유지시키기 위해 各國에서는 定期的으로

〈表 7〉 19個國의 遺族年金額水準(1979)

	未亡人年金	1人當孤兒年金	完全孤兒年金 ²⁾	遺族年金 上	遺族年金 下	葬祭費 ³⁾	遺族範圍
오스트리아	0.6P	0.24P	0.36P	1.1P	0.3E	M	W·C
벨기에	0.8P	111.5弗	—	—	347.3弗	F	W·C
브라질 ¹⁾	$P \cdot (50 + 5d) / 100$	—	—	P	0.5P	F	W·C·Pa·B
캐나다	0.6P	45.1弗	—	—	—	F	W·C
이집트 ¹⁾	—	老齡年金과 동일	—	0.8E	17.9弗	F	W·C·Pa·B
프랑스	0.5P	D	—	—	121.1弗	F	W
西獨	0.6P	0.1P+D	0.2P+α	P	—	M	W·C
그리스	0.7P	0.2P	0.6P	P	130.7弗	M	W·C
이스라엘	$(0.16 + 0.02n)A$	0.05A	0.1A	—	—	F	W·C
이탈리아	0.6P	0.2P	0.4P	P	146.8弗	M	W·C·Pa
日本	0.5P	D	203弗 이상	—	168.3弗	F	W·C·Pa·G·Gc
멕시코	0.5P	0.2P	0.3P	P	—	F	W·C·Pa
네덜란드 ¹⁾	439.5~642.9弗	—	142.2~272.5弗	—	—	M	W·C
포르투갈	0.6P	0.1~0.2P	0.2~0.4P	P	28.9弗	F	W·C
스페인	0.45E(0.6P)	0.2E	0.2E+α	P	111.3弗	F	W·C·Pa·B
스웨덴	0.4P	0.1~0.15P	0.4P	—	0.4P	—	W·C
스위스	0.8P	0.4P	0.6P	E	242弗	—	W·C
터키	2/3P	0.25P	0.5P	P	92.4弗	F	W·C·Pa
美國	P	—	0.75P	513.8弗	182.7弗	—	W·C·Pa

註: P: 老齡 및 障害年金額, E: 平均所得, D: 加給年金, A: 年金算定基準(表 5 참조).

d: 扶養者數, α: 追加給與, W: 配偶者, C: 子女, Pa: 父母, B: 兄弟, G: 祖父母, Gc: 孫子女

1) 未亡人年金과 孤兒年金의 區分없이 遺族年金으로 統合.

2) 兩親 모두가 없는 孤兒에 支給되는 年金임.

3) M은 醫療保險에서 支給되며, F는 年金保險에서 支給함을 표시함.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前掲書.

〈表 8〉 各國¹⁾의 年金額 調整方法

(단위 : %)

	調整期間	調整基準	物價 ²⁾ 上昇率	賃金 ²⁾ 上昇率
아르헨티나	分期別	賃金	136.1	—
濠洲	每年	物價	11.0	12.9
오스트리아	每年	賃金	6.5	10.3
벨기에	定期的	賃金·物價·其他	7.8	13.2
브라질	每年	最低賃金	32.2	—
캐나다	分期·每年 ³⁾	物價	8.4	10.8
칠레	每年	物價	167.2	178.1
콜롬비아	每年	賃金	22.8	22.0
덴마크	6個月	物價	10.1	13.7
프랑스	6個月	賃金	9.7	15.6
西獨	每年	賃金·其他 ⁴⁾	5.0	7.7
헝가리	每年	2%	4.3	7.1
이스라엘	6個月	賃金·物價 ⁵⁾	37.1	41.0
이탈리아	每年	賃金·生計費	14.1	20.4
룩셈부르크	每年·定期	賃金·生計費	6.9	—
멕시코	5年	10% ⁶⁾	16.8	19.1
네덜란드	6個月	賃金	7.4	10.5
노르웨이	—	物價·所得	8.4	11.7
페루	—	賃金	30.1	—
스페인	定期的	賃金·物價·其他	15.8	25.6
스웨덴	—	物價	8.9	11.8
스위스	2年	賃金·物價	4.9	5.6
터키	每年	法定常數(最低賃金)	25.4	—
英國	每年	賃金·物價증높은것	13.7	15.8
우루구아이	每年	賃金·物價	68.4	—
유고슬라비아	定期的	賃金·生計費	17.6	19.7

註 : 1) 生計費 變化에 따라 調整하는 國家(베네티, 부룬디, 콩고,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가봉, 日本, 마우리티니아, 마우리티우스, 뉴질랜드, 니제르, 포르투갈, 루완다, 토고, 美國, 어퍼볼타, 자이레 등)는 除外하였음.

2) 1971~79年間の 年平均上昇率로서 年金額調整基礎로 提示한 것이 아니고 各國의 經濟狀態를 比較하기 위한 것임.

3) 被傭者年金保險과 綜合制度(universal pension system)는 分期別로 調整함.

4) 賃金과 其他 經濟要因變化에 따라 調整하지만 一時的으로 一定率을 적용함(1978/79 : 4.5%, 1980/81 : 4%)

5) 6個月마다 國民平均賃金變化에 따라 調整하고, 1年동안의 物價水準을 감안하여 調整함.

6) 最低賃金보다 적어질 경우에 調整함.

資料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78, 1981.

United Nation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April 198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78.

年金額算定基礎를 調整하고 있다. <表 8>에서와 같이 年金額은 거의가 每年 調整하지만 아르헨티나는 分期別로 調整하고,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는 6個月마다 調整·支給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2年, 멕시코는 5年마다 調整한다. 年金額算定을 調整하는 基礎는 賃金, 物價, 生計費 등의 單一基準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2가지 이상의 複合要因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生計費를 基準하여 調整하는 國家가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賃金과 物價 중 單一變數만을 적용하는 때는 各國의 經濟狀態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國家가 賃金上昇率이 物價上昇率보다 높음을 감안할 때 賃金上昇率을 調整基準으로 하는 國家는 年金受給權者를 保護하는데 중점을 두고, 物價上昇率을 基準으로 삼는 國家는 年金財政을 보다 重要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英國에서는 賃金과 物價指數 중 높은 指數를 調整基準으로 함으로써 受給權者의 實質購買力을 保障하고 있으나, 西獨은 賃金과 其他 經濟要因의 變化에 따라 調整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年金財政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暫定的으로 1978/79년에는 4.5%, 1980/81년에는 4%를 調整함으로써 平均賃金上昇率(1971~79年間 7.7%) 보다 낮게 調整되고 있다.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法에서도 年金受給權者의 實質購買力을 유지하기 위해 年金額은 國民의 生活水準, 賃金, 物價, 其他 經濟事情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事情에 맞도록 遲滯없이 調整措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自動調整基準이 없고, 調整期間도 明示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物價上昇率이나 賃金上昇率중 한가지 혹은 複合

指數를 基準으로 설정하여 每年 이에 따라 自動調整될 수 있는 裝置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年金財政

1. 財源調達

各國 年金保險制度의 財源은 通常 兩者 혹은 三者負擔方法에 의해 調達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國家는 勞·使 이외에도 政府가 財政을 支援하는 三者負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釀出料 중 被保險者 寄與金은 加入者의 賃金 혹은 所得에 法定의 料率로 賦課되고, 使用者負擔金은 被保險者의 寄與率과 같거나 그 이상을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被保險者의 賃金 또는 所得은 上限을 책정하여 高所得者의 釀出料納付額을 制限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에서는 行政費나 給與缺損額을 補助하고 있다. 釀出料率은 國家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年金制度의 成熟期間, 制度運營形態, 經濟狀態 및 年金財政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즉, <表 9>에서와 같이 브라질, 캐나다, 西獨, 日本, 스위스, 美國 등의 國家는 被傭者와 使用者가 동일하게 釀出料를 負擔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11個國은 使用者負擔率이 被傭者負擔率보다 높고, 스웨덴은 被傭者負擔은 없고 全額使用者가 負擔하고 있다. 反面에 네덜란드의 경우는 被傭者가 使用者보다 높은 率을 負擔하고 있다. 그리고 西獨, 日本,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國家는 低所得勤勞者의 釀出料를 免

除하고 있다.

한편, 이들 國家의 年金制度의 1977年度 財政收入의 構成比率을 보면 <表 10>과 같이 勞·使·政府의 三者負擔 중 캐나다의 경우는 政府負擔이 57.2%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政府負擔이 20%를 초과하는 國家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西獨, 스위스 등의 國家이다. 반면에 포르투갈, 스페인, 美國 등은 政府負擔率이 5% 미만으로써 각각 4.1%, 4.1% 및 0.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國家는 被保險者와 使用者의 釀出料收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被保險者의 寄與金收入이 全體收入의 67.8%를 차지해 年金加入者가 대부분의 財源을 調達하고 있는 셈이다.

政府負擔額은 一般稅源(直接稅와 間接稅)에서 負擔하는 것이 보통이나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는 特別稅로도 財源을 調達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 이스라엘, 스웨덴, 터키, 캐나다 등의 國家는 積立基金에 의한 資本的 收入이 全財源의 13.6~2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資本的 收入이 1% 미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制度는 勞·使·政府의 三者負擔으로 財源을 調達하도록 되어 있는데 被傭者는 月報酬의 2~3%, 使用者는 勤勞者 月報酬給與額의 3~4%를 負擔토록 하여 使用者가 높은 負擔을 賦課하도록 되어 있으며, 政府에서는 行政費一部와 低所得勤勞者의 釀出料 一部를 補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表 9> 19個國의 被傭者年金保險의 釀出料率(1979)

(단위 : %)

	被保險者 負擔	使用者 負擔	政 府 負 擔
오스트리아	9.25	10.25	缺損額, ITA ¹⁾ 全額
벨기에	6	8	補助金, MTA ²⁾ 全額
브라질	8	8	行政費, 缺損額
캐나다	1.8	1.8	缺損額, ITA 全額
이집트	10	15	釀出料 1%, 缺損額
프랑스	4.7	8.2	—
西獨	9	9	補助金, 出產·失業期間 釀出料의 18%
그리스	4.75	9.50	必要時補助
이스라엘	2.2	4.6	補助金, 釀出料의 15% 및 障害給與의 75%
이탈리아	7.15	16.61	年金受給者 1人當 月 14.4弗, MTA 全額
日本	4.55	4.55	給與費의 20%
멕시코	1.50	3.75	使用者負擔의 20%
네덜란드	17.70	10.35	低所得者釀出料, 障害兒年金, 缺損額
포르투갈	7.5	19.0	一部補助
스페인	2.14	12.04	補助金
스웨덴	—	20.30	—
스위스	4.7	4.7	老齡給與의 16%, 障害給與의 50%, ITA全額
터키	7	8	—
美國	5.08	5.08	補助金, MTA 全額

註 : 1) ITA : 所得調査手當

2) MTA : 家計資産調査手當

資料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前掲書.

財政運營을 基金積立方式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資本的 收入에 크게 依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釀出料는 國民經濟的 側面에서의 物價動向, 國民貯蓄行態 등을 감안한 勤勞者와 使用者의 負擔能力, 加入者의 拂入額과 給與額의 損益分析, 그리고 年金財政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數理分析結果 등을 基礎로 料率이 결정되어야 한다²⁶⁾. 그러나 우리나라의 國民福祉年

金法은 1973년에 制定되었기 때문에 約 8年間의 期間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再檢討가 필요하며, 年金財政의 運營방법도 積立方式에 의한 資本的 收入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適用範圍가 擴大되는데 따라서 財政支出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國庫負擔을 擴大하고 基金運營 역시 修正積立方式을 導入, 世代間의 公平負擔과 再分配를 기할 수 있도록 代案을 摸索하는 것이 長期的으로 바람직하다.

〈表 10〉 19個國¹⁾의 年金保險制度의 收入²⁾構成比(1977)

(단위 : %)

	釀 出 料		特別稅	中 央 政 府	地 方 政 府	資本的 收 入	其他	計
	被保險者	使用者						
오스트리아	34.3	30.4	—	33.4	—	0.5	1.4	100.0
벨기에	35.8	36.7	—	21.9	—	5.5	0.1	100.0
캐나다	14.4	14.4	—	57.2	—	13.6	0.4	100.0
프랑스	27.7	47.4	7.9	15.3	—	1.0	0.6	100.0
西獨	38.5	37.5	—	21.7	—	2.1	0.2	100.0
그리스 ³⁾	35.3	38.6	12.8	6.6	—	4.8	2.0	100.0
이스라엘	20.1	32.9	—	32.1	—	14.9	0.0	100.0
이탈리아 ³⁾	15.8	65.3	—	14.4	—	3.0	1.5	100.0
日本	31.7	28.3	—	18.5	0.1	18.4	3.1	100.0
멕시코 ⁴⁾	23.2	58.1	—	12.4	—	3.6	2.7	100.0
네덜란드	67.8	22.7	—	7.5	0.0	2.0	—	100.0
포르투갈 ^{3,5)}	27.9	64.5	—	4.1	—	2.5	0.9	100.0
스페인 ³⁾	19.3	74.5	0.7	4.1	—	0.4	1.1	100.0
스웨덴	2.5	62.8	—	12.8	4.1	17.8	—	100.0
스위스	40.1	32.2	—	15.8	8.0	3.9	0.1	100.0
터키	37.6	37.6	—	—	—	20.8	4.0	100.0
美國	49.7	46.0	—	0.9	—	3.5	—	100.0

註 : 1) 調査對象 19個國中 브라질, 이집트는 資料未詳으로 제외하였음.

2) 年金保險收入에는 他制度에서의 轉入金을 제외하고, 公務員, 軍人 등의 公職者年金制度 收入도 제외하였음.

3) 年金保險收入에 대한 區分이 없어 全社會保險收入으로 계산하였음.

4) 1974年度 資料임.

5) 1976年度 資料임.

資料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enth International Inquiry, 1975-1977, Basic Tables*, Geneva, 1981.

_____, *The Cost of Social Security: Ninth International Inquiry, 1972-1974, Basic Tables*, Geneva, 1978.

26) 閔載成, 「國民福祉年金制度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pp.187~208 참조.

2. 年金財政支出

各國의 年金財政支出現況을 보면 <表 11>에 서와 같이 給與費가 主宗을 이루어 總年金財政支出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給與方法에는 現物給與와 現金給與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現金給與를 하고 있다. 멕시코와 프랑스에서는 廢疾의 경우 障害年金 이외에도 醫療費의 現物給與를 실시하고 있어 現物給與比率이 他國家보다는 높다. 年金制度를 운영하기 위한 行政費는 總年金財政支出의 2~3% 內外를 支出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등은 1% 미만의 行政費를 支出하고 있다. 반면에 1971년부터 制度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멕시코는 19.3%, 1964년부터 給與範圍가 障害 및 遺族年金까지 擴大된 터키는 12.2%의 行政費를 支出하고 있다. 즉, 管理行政費는 年金制度의 導入期間이 짧을수록 給與費支出額의 相對的 減少로 全年金財政支出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各國의 總社會保障費支出²⁷⁾ 중에서 年金保險支出²⁸⁾이 차지하는 比重은 <表 12>에서와 같이 스위스 51.1%, 오스트리아 42.3%,

27) 社會保障費支出總額에는 社會保險, 公的扶助, 公衆保健 서비스 등의 諸支出을 포함하였음(ILO, 前掲書의 Annex 참조).

28) 年金保險支出에는 公務員, 軍人 등의 公職者年金制度의 支出額은 제외되었고, 被傭勤勞者, 自營者, 住民 등의 年金制度의 總支出만 고려하였음.

29) 當期 財政赤字는 國庫에서 補填하고 있다.

30) 年金制度에 관한 最初 法定年度는 日本 1941年, 터키 1949年, 스위스 1946年, 멕시코 1943年이며 <表 12>의 나머지 國家는 1940年 이전에 制度가 導入되었음.

31) 朴宗淇, 「經濟成長과 社會保障의 當面課題」,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pp. 24~42 참조.

32) 閔載成, 「社會保障」, 朴宗淇·李奎憲 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1, p. 493.

西獨 39.8%, 네덜란드 37.8%, 스웨덴 30.3%, 美國 33.8% 등으로 30% 이상을 支出함으로써 다른 社會保障部門支出額보다 그 比重이 높은 데 반해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터키 등은 20~30% 수준에 있으며, 이스라엘, 日本, 멕시코 등은 20% 미만의 비교적 낮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各國 年金財政의 收支는 거의 黑字를 보이고 있으나 1977년에 프랑스 112.8%, 스위스 106.1%, 美國 105.2%의 收支率을 보여 當年度 赤字를 示顯하고 있는데, 이는 年金財政의 他制度에로의 轉入金 및 他制度에서의 轉入金の 차이와 財政運營方法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²⁹⁾. 특히, 日本과 터키 등의 國家는 制度導入時期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收入의 26.4%와 29.8%를 각각 支出한 것으로 나타나 財政黑字率이 높다³⁰⁾. 그러나 1970年代의 世界的인 油類波動으로 經濟不況의 繼續, 國際收支惡化와 인플레이의 蔓延, 失業率의 증가 등은 各國의 社會保障費支出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西歐先進國 중에서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財源確保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³¹⁾. 그리고 年金制度實施期間은 國民總生産에 대한 社會保障費支出의 比率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實施期間이 오랜 國家일수록 社會保障費支出額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은 1965년에 GNP의 0.71%에 불과하였으나 1977年 醫療保險制度의 본격적인 실시로 0.94%로 증가되었고, 1981년에는 1.77%까지 크게 증가되고 있다³²⁾. 그러나 所得保障의 基本制度인 國民福祉年金制度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不遠間

〈表 11〉 19個國¹⁾의 年金保險財政支出²⁾ 構成比(1977)

(단위 : %)

	給 與 費			行 政 費	其 他	計
	現金給與	現物給與	計			
오스트리아	93.4	1.3	94.7	3.3	2.0	100.0
벨기에	95.7	0.3	96.0	1.8	2.2	100.0
캐나다	98.3	—	98.3	1.7	—	100.0
프랑스	82.8	14.2	96.4	2.7	0.9	100.0
독일	94.7	3.5	98.2	1.5	0.3	100.0
이탈리아 ³⁾	98.1	—	98.1	1.9	0.0	100.0
일본 ³⁾	95.2	0.2	95.4	3.0	1.6	100.0
멕시코	93.3	2.2	95.5	3.3	1.2	100.0
네덜란드	54.4	22.4	76.8	19.3	3.9	100.0
스웨덴	97.7	—	97.7	2.3	0.0	100.0
스위스	99.3	—	99.3	0.7	—	100.0
터키	93.3	2.9	96.2	0.5	3.3	100.0
미국	83.1	—	83.1	12.2	4.7	100.0
	98.3	0.1	98.4	1.6	—	100.0

註 : 1) 調査對象 19個國 중 브라질, 이집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5個國은 資料未備로 제외하였음.

2) 支出額에는 他制度에로의 轉入金과 公務員·軍人 등의 公職者年金制度의 支出額은 제외하였음.

3) 1974年度 資料임.

資料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前掲書.

〈表 12〉 19個國의 社會保障費와 年金保險費支出(1977)

(단위 : %)

	總社會保障費支出	年金保險支出 ¹⁾	年金給與費	年金保險支出 ¹⁾
	國內總生産	總社會保障費支出	社會保險給與費	年金保險收入
오스트리아	21.1	42.3	57.2	89.2
벨기에	25.5	24.5	32.5	97.6
브라질	6.2	—	56.0	—
캐나다	14.5	20.1	28.9	72.0
이집트	—	—	—	—
프랑스	25.6	26.6	43.6	112.8
독일	23.4	39.8	52.4	94.9
그리스	11.4	—	68.6	—
이탈리아	13.4	19.9	30.8	70.5
일본	22.8	—	69.4	—
멕시코	9.7	19.7	30.6	48.0
네덜란드	3.4 ²⁾	13.8 ²⁾	20.1	53.3 ²⁾
포르투갈 ³⁾	27.6	37.8	50.4	98.0
스페인	11.0	—	40.5	—
스웨덴	13.6	—	40.4	—
스위스	30.5	30.3	55.6	68.6
터키	16.1	51.1	70.4	106.1
미국	4.1	22.3	28.5	37.0
	13.7	33.8	66.3	105.2

註 : 1) 年金保險收入과 支出에는 他制度에서의 轉入金 및 他制度에로의 轉入金과 公務員·軍人 등의 公職者年金制度의 收支現況은 제외하였음.

2) 1974年度 資料임.

3) 1976年度 資料임.

資料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前掲書.

_____, *The Cost of Social Security: Ninth International Inquiry, 1972-1974*, Geneva, 1979.

_____,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enth International Inquiry, 1975-1977*, Geneva, 1981.

이 制度가 실시된다면 社會保障費支出은 急進的으로 증가될 것이 전망된다. 따라서 年金財政의 均衡維持를 위한 對策과 國民經濟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諸般要因을 면밀히 검토하여 對備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結 論

1973년에 制定된 우리나라 年金制度는 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施行이 保留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과 福祉에 대한 國民의 要求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이 끝나는 1986년까지는 國民福祉年金制度를 修正·補完하여 公의所得保障制度로 確立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制度樹立後 經濟·社會的 諸般與件들이 변화한 데 대한 많은 問題가 提起되고 있고, 制度自體의 問題點도 상당히 露出되고 있어 制度施行을 위한 政策遂行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所得保障制度인 老齡·廢疾·死亡에 대한 年金制度를 실시해 오고 있는 各國의 制度內容중에서 運營方法, 適用對象 및 그 範圍, 給與水準, 年金受給資格要件, 財源調達과 年金財政運營方法 등을 중심으로 比較·分析함으로써 不遠間 實施될 우리나라 年金制度의 改善方向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本研究資料를 提示한다. 특히 西歐先進國의 年金制度가 1970年代에 들어와서부터는 國家發展에 많은 문제와 副作用을 惹起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先進國들이 경험한 過誤를 踏襲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요망된다.

本論文中에서 提示한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79年 현재 어떤 형태이던 社會保障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國家는 134個國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91.0%인 122個國이 公의所得保障制度로 年金制度를 導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國民福祉年金制度和 같은 社會保險形態로 制度를 運營하는 國家는 75.4%인 92個國이고, 우리나라의 現行制度和 같이 特殊職域年金制度만을 실시하는 國家는 12個國에 불과한데 이들의 대부분은 1人當 GNP가 1,000弗 미만의 低開發國家들이다.

2. 社會保險形態의 各國 年金制度는 被傭者中心制度가 가장 많으며, 年金財源은 勞·使負擔으로 주로 調達하고 國家에서는 行政費와 缺損額을 支援하며, 國家의 獨占管理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給與費의 算定은 所得再分配機能을 갖도록 報酬比例方式과 均等方式을 折衷하고 있다. 우리나라 現行 3個 公의 年金制度는 報酬比例方式으로 一時金支拂形態를 擇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시될 國民福祉年金制度는 社會保險形態에 立脚하고 있다.

3. 年金制度의 適用對象者는 先進國일수록 全國民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은 被傭勤勞者를 중심으로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그리고 行政管理上 어려움이 많은 家族從事者, 日傭勤勞者, 農林從事者 등은 制度施行初期에는 適用排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適用範圍의 擴大는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國民의 衡平을 고려하여 조속히 擴大實施되어야 하며, 特殊職種인 鑛夫, 船員, 航空塔乘員의 資格要件이나 職種選定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外國人의 加入資格은 國家間의 協定締結時를 대비하여 法的 根據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老齡年金의 受給資格要件은 受給開始年齡, 制度加入期間, 退職與否에 따라 制度化되고 있는데, 年金受給開始年齡은 男子 60歲, 女子 55歲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각각 65歲, 60歲로 되어 있다. 그리고 加入期間은 10~20年の 경우가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被傭者年金의 경우 退職을 前提로 年金을 支給하는 國家가 많다. 우리나라 制度 역시 이와 같은 要件을 具備하고 있으나 老齡年金의 特例는 減額年金受給者와 競合하여 給與水準에의 隔差가 심해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受給開始年齡이 國民所得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도 施行過程에서 年齡을 再調整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障害年金支給을 위한 廢疾程度는 各國의 制度와 類似하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給與水準이 낮고 關聯制度와의 調整이 未洽하므로 相互調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障害年金額支給水準은 再活治療를 위한 常時保護加給額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障害年金水準도 外國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年金額의 下限設定이 없다.

또한 遺族年金給與水準 역시 葬祭費 등의 附加給與가 없으며 給與水準도 비교적 낮다. 따라서 生活保障水準까지의 年金額上限의 上向調整方案이 再檢討되어야 하며, 遺族의 범위는 社會變化趨勢를 감안하여 縮小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各國의 年金額算定基準은 일반적으로 平均賃金(所得)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外國에 비하여 年金額支給上限이 낮고 下限이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年金額支給水準이 비교적 낮다. 따라서 年金水準을 現行 公務員年金의 上限線과 alike 調整하고, 下限의 新設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定額制로 되어 있는 扶養家族을 위한 加給年金은 定率制로 轉換할 수 있는 代案의 검토가 要望된다.

7. 各國의 年金制度에서는 年金受給權者의 實質購買力을 유지하기 위한 調整方案으로 賃金·物價 및 生計費를 감안하여 自動調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自動調整基準이나 期間의 明示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이 곤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自動調整을 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年金制度의 財源調達은 勤勞者 月報酬의 5~7%를 勞·使가 共同으로 負擔하도록 되어 있으나 制度樹立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賃金 및 物價上昇率, 國民貯蓄行態 등을 감안한 負擔能力과 被傭者의 拂入額과 給與額의 損益分析 등을 고려하여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年金財政의 운영방법도 資本的 收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適用範圍가 擴大되는데 따라서 財政支出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國庫負擔을 擴大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基金運營도 世代間의 公平分擔을 위한 修正積立方式을 導入할 수 있는 方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健康保險組合連合會, 『社會保障年鑑』, 東洋經濟新報社, 東京, 1981.
- 閔載成, 「國民福祉年金制度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 「社會保障」, 朴宗淇·李奎億 編, 『國家豫算斗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1.
- 朴昇, 『社會福祉制度의 段階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經濟科學審議會議, 1981. 9. 5.
- 朴宗淇, 「經濟成長斗 社會保障의 當面課題」,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延河清, 「國民福祉年金制度實施斗 所得再分配效果」,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Aarnio, Margaretha, "Some Data Concerning Pensionable Age in the General Pensions Schemes of Different Countries",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eneva, 1978.
- Arnold, Robin, "Social Security Reform in Chile", *Benefits International*, February 1981.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Geneva, 1978.
- , *The Cost of Social Security: Ninth International Inquiry, 1972~1974*, Geneva, 1979.
- ,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enth International Inquiry, 1975~1977*, Geneva, 1981.
- ,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enth International Inquiry, 1975~1977, Basic Tables*, Geneva, 1981.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78 · 1981.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Evolution of Social Security and ISSA Activities 1978~1980*, XXth General Assembly Report, I, Geneva, 1980.
- , *Factors Entering into the Calculation of Pension Amounts and Their Influence on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of Insured Pensions*, XXth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80.
- Kritzer, Barbara E., "Chile Changes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Bulletin*, 44 (5): 33~37, May 1981.
- Nationa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Cost and Financing of the Social Services in Sweden in 1977*, Stockholm, Sweden, 1979.
- United Nation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April 1981.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 C., May 1980.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September 1979.
- World Bank, *1980 World Bank Atlas: Population, Per Capita Product, and Growth Rates*, Washington, D.C., 1980.